

| | |
|------|------------|
| 등록번호 | 보수과- |
| 등록일자 | 2017. 5. . |
| 결재일자 | 2017. 5. . |
| 공개구분 | |

| 주무관 | 계장 | 과장 | 소장 |
|-----|-----|-----|-----|
| 김무용 | 부부식 | 박재아 | 이성우 |
| 협조자 | 김영조 | | |

「2017년」 실시설계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안)

우리 사무소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 설계를 실시하고자 실시설계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안)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평가하고자 합니다.

붙임 : 2017년 실시설계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안) 1부. 끝.

**영 주 국 토 관 리 사 무 소
보 수 과**

「2017년도」

실시설계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안)

2017. 5.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적격심사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

I. 일반사항

1. 실시설계용역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686호, 2016. 4. 1.)」에 의하여 평가하며, 세부사항은 “II”항의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이 끝난 후 적격심사대상자를 선정·통보(구두, 유·무선 통신, 인터넷상으로 통보한 경우 포함)하고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적격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2호 서식]
 -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 평가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가.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건설기술인협회 발급본]
 - 나.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계획표(사업책임자 1인, 분야별책임자 1인)[양식1]
 - 다. 참여기술자에 대한 이력 및 경력 실적사항[양식2, 양식3]
 - 라. 경영상태 평가자료[양식4]
 - 마. 용역업무 중복도[양식5]
 - 바.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등[양식6]
 - 사. 적격심사 자기평가 산출근거[양식7]
 - 아. 기타 당해 용역수행 관련 결격 사유
 - 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부본 1부)
 - 규격 : A4(210cm×296cm)
 - 지질 : 백상지
 - 인쇄방법 : 공판인쇄
 - 제본 : 양면좌철(무사무선철)
3.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적격심사 평가기준 및 평가서 작성요령을 충분히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출된 내용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실이 발견될 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4. 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최종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위원회 정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세부평가기준의 적정성

나. 평가기준 및 적용에 이의나 의문 발생시

다. 제출된 평가서 내용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시

라. 기타 발주청의 장이 평가위원회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5. 평가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위원 4인으로 한다.

| 구 분 | 직 책 | 비 고 |
|-----|---------|----------|
| 위원장 | 소 장 | 평가업무 총괄, |
| 위 원 | 운영지원과장 | 평가결과 확인, |
| " | 보 수 과 장 | 평가결과 확인, |
| " | 구조물과장 | 평가결과 확인, |
| " | 보 수 계 장 | 평가결과 확인, |

6. 평가자료로 제출한 서류를 위·변조, 허위 등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경쟁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함

나.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7. 평가시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평가점수는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째자리까지로 한다.

II. 세부평가기준

1.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기준

가. 평가대상

공고일 현재 참여사에 재직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나. 자격 또는 등급 평가기준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 기술자격 취득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학·경력 기술자를 해당 전문분야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다. 평가대상기술자

평가대상 기술자는 발주하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평가한다.

<표 1>

| 공 종 | 평가대상기술자(인) | | | | 비 고 | |
|--|------------|-----------|-----------|--------|----------------------|--|
| | 계 | 책임 | 분야 | | | |
| | | (도로 및 공항) | (토질 및 기초) | (토목구조) | | |
| 시설물 보수공사, 낙석산사태 정비공사,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 2 | 1 | | 1 | (토질 및 기초 또는 토목구조 1인) | |

라. 기술자 중복업무 사항

- (1) 참여기술자 1인이 동시에 2건 이상의 용역사업에 참여할 경우 유리한 1건 용역사업에 대하여만 인정함
- (2) 참여기술자 1인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분야(또는 사업책임자)에 참여할 경우 유리한 1개 분야에 대하여만 인정함

마. 참여기술자의 경력평가기준

(1) 사업책임기술자[전문분야 : 도로·공항(舊도로 및 공항)]

- (가)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포함), 한국도로공사, 광역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도로분야 설계(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경력 또는 동 발주기관의 도로분야 설계용역 감독(관리자) 경력 : 100%

- (나) 「국가, 공공기관,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도로분야 설계(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경력 또는 동 발주기관의 도로분야 설계용역 감독(관리자) 경력 : 80%
- (다) 「국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도로분야 시공경력 또는 건설 관련업체 관리자 경력, 도로분야 감리(설계감리, 시공감리, 책임감리, 기술 지원감리) 경력과 동 발주기관의 도로분야 공사감독(관리자) 경력, 학교·교육기관의 도로분야 강의 경력 : 60%

※ 국 가 :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및 그 소속기관

※ 공 공 기 관 : 「공공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공기업
ex)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 특별·광역시, 도

□ 기초자치단체 : 시·군·구

(2) 분야별책임기술자[전문분야 : 토질·지질(舊토질 및 기초) 또는 구조(舊토목구조)]

- (가) 「국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도로분야 설계(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경력 중 전문분야가 해당분야인 경력 또는 동 발주기관의 도로분야 설계(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감독(관리자) 경력 : 100%
- (나) 「국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기타 토목분야 설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경력 중 전문분야가 해당분야인 경력 또는 동 발주기관의 기타 토목분야 설계(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감독(관리자) 경력 : 80%
- (다) 「국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도로분야 설계(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경력 중 해당분야 이외의 전문분야, 도로분야 시공경력 또는 건설관련업체 관리자 경력, 도로분야 감리(설계감리, 시공감리, 책임감리, 기술지원감리) 경력과 동 발주기관의 도로분야 공사감독(관리자) 경력, 학교·교육기관의 해당분야 강의 경력 : 60%

바. 참여기술자의 경력 평가 시 근무경력의 인정범위

- (1) 참여기술자의 경력 평가 시 도로분야 경력은 「도로법」 제11조에 의한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 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한 도로(광로, 대로, 중로, 소로)에 한한다.
- (2) 도로의 건설 또는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 근무경력은 개인경력 확인서에 감독관련 업무를 수행한 용역명 또는 사업명이 명확히 기재된 경력에 한하며,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되어 있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 (3) 발주청에서 시행한 용역 또는 공사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에 한한다.
- (4) 참여기술자 1인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분야에 참여할 경우 유리한 1개 분야 경력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 (5) 건설업체 관리자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관리업무를 수행한 도로건설공사 등의 발주청, 사업명이 명확히 기재된 경력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 (6) 참여기술자의 경력산정 시 현재 수행중인 비상주감리(전체분이 준공되지 않은 경우)는 경력산정에서 제외한다.
- (7) 일정기간내에 서로 상이한 전문분야의 건설공사업무 수행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기간을 중복사업 건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8) 참여기술자 경력산정은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상의 참여일로 산정한다.

ex) 1990. 1. 1. ~ 1990. 6. 30. (80일) → 80일 적용

(9) 참여기술자 경력산정 시 각각의 경력일수를 합산하여 1년은 360일로 적용하여 연수를 산정한다.

사. 참여기술자의 용역실적 평가기준

(1) 참여기술자의 실적인정 대상사업은 시행 완료한 용역사업 중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포함), 공공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도로분야 설계(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 수행실적에 대하여 평가하되,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용역명이 기재된 실적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2) 상기 "(1)"항의 도로분야 설계용역 실적은 「도로법」 제11조에 의한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 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한 도로(광로, 대로, 중로, 소로)에 한한다.

(3) 참여기술자의 실적평가 시 참여기술자가 상기(1)항의 발주청에서 발주한 도로분야 설계(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용역감독(관리자)으로 참여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 실적으로 인정한다.

(4) 참여기술자 1인이 동시에 2개 이상의 용역에 참여할 경우 유리한 1개 용역 실적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5) 참여기술자의 실적평가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상의 참여일로 산정한다.

ex) 1990. 1. 1. ~ 1990. 6. 30. (80일) → 80일 적용

(6) 참여기술자의 실적평가 시 각각의 경력일수를 합산하여 1개월은 30일로 적용하여 개월수를 산정한다.

2. 경영상태 평가

- 가.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기준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신규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다.
- 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한다.

3. 용역업무 중복도 평가

- 가. 용역업무 중복도는 입찰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90일) 이상인 용역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잔여과업의 합산기한이 1년 이하인 경우 1건으로 평가한다.(공동도급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율 반영)

| 1년이하 | 2년이하 | 3년이하 | 4년이하 |
|------|------|------|------|
| 1건 | 2건 | 3건 | 4건 |

- 나.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기술자의 잔여과업기간 산정시 각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잔여 과업기간에 아래 각 항의 가중치를 곱하여 합산한 후 산정된 합산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 2인기준 가중치 | |
|------------------------|-----|
| 사업책임기술자 | 0.5 |
| 구조분야책임기술자 또는 토질분야책임기술자 | 0.5 |

4. 신용도 평가

- 가. 입찰참가 제한기간

(1) 용역업자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련법령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의 0.2점씩 감점(1일~1월이하 0.2점,

2월이하 0.4점.....)

(2) 참여기술자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련법령에 의한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평가대상 기술자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배점의 0.2 점씩 감점(1일~3월이하 0.2점, 6월이하 0.4점.....) /

나.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기술자의 신용도는 아래 각 항의 가중치를 곱하여 합산한 후 산정된 합산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 2인기준 가중치 | |
|------------------------|-----|
| 사업책임기술자 | 0.5 |
| 구조분야책임기술자 또는 토질분야책임기술자 | 0.5 |

5.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공동이행방식)을 허함/

【별표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제4조제2항 관련)

| 구 분 |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① |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용역(1억 원이상 고시금액 미만의 정밀안전 진단용역 포함)② |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용역③ | 30억원 이상인 용역④ | 비 고 |
|----------------------|--------------|---|----------------------|-----------------|------------------------------------|
| 계 | 100 | 100 | 100 | 100 | |
| 당해 용역 수행 능력 | 배점 범위 | 30 | 50 | 70 | 80 |
| | 심사 항목 | 부표 적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내지 별표4에 따른 발주 청 평가기준 적용 | | | |
| 입찰 가격 | 배점 범위 | 평점=30/100× 평가점수 | 평점=50/100× 평가점수 | 평점=70/100× 평가점수 | 평점=80/100× 평가점수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
| 기타 당해 용역 수행 관련 결격 사유 | △20점 | 1.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이내 공사 시공 중 또는 완공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2. 부도 또는 파산의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 | |
| | △20점 | 법정관리 또는 화의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발급가능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 | |

비 고

1. 입찰가격 평점산식(|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① 평점(점)= $70-20 \times | 88/100 - \text{입찰가격} / \text{예정가격} | \times 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25% 이상인 경우는 평점 65점 적용

② 평점(점)= $50-2 \times | 88/100 - \text{입찰가격} / \text{예정가격} | \times 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3% 이상인 경우는 평점 40점(감리용역의 경우 90.5% 이상인 경우 45점) 적용

③ 평점(점)= $30-2 \times | 88/100 - \text{입찰가격} / \text{예정가격} | \times 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3% 이상인 경우는 평점 20점 적용

④ 평점(점)= $20-2 \times | 88/100 - \text{입찰가격} / \text{예정가격} | \times 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 이상인 경우는 평점 5점 적용

2. 고시금액 이상의 용역수행능력 평가시 당해 발주기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절차에 의하여 동 시행규칙 별표2 내지 별표3에 규정한 세부평가사항, 배점 범위, 평가기준·방법 및 가·감점 사항 등에 대한 용역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적격심사시 기간계산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한다. 다만, 당해 용역수행능력 결격 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일은 적격낙찰자 통보일로 한다.
4. 적격심사결과 가·감점을 합산한 종합평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부 표】

고시금액 미만 용역 당해 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 평가 항목 | 세부평가사항 | 배점 기준 | 평 가 기 준 | | | | | |
|--------------------|--------------------------------------|-------|--|---------------|-------------|-------------|--------------|--|
| 계 | | 100 | | | | | | |
| | 소계 | 50 | - 설계·감리·시공 등 건설분야 경력·실적을 동일하게 평가 | | | | | |
| | - 사업책임기술자 | 25 | (7) | 특급 (수석감리사) | 고급 (감리사) | 중급 (감리사) | 초급 (감리사보) | |
| | ·기술자등급 (책임감리원등급) | | | 7 | 5 | 3 | 0 | |
| 참여 기술자 (참여 감리원) | ·경력 | (8) | 12년이상 | 10년이상 | 8년이상 | 6년이상 | 6년미만 | |
| | | | 8 | 6 | 4 | 2 | 0 | |
| | ·용역실적 | (10) | 120개월 이상 | 108개월 이상 | 96개월 이상 | 84개월 이상 | 84개월 미만 | |
| | | | 10 | 8 | 6 | 4 | 2 | |
| | - 분야별 책임기술자 | 25 | - 사업책임기술자와 동일하게 평가 | | | | | |
| | ·기술자등급 (보조감리원등급) | (7) | 고급(감리사) | 중급(감리사) | 초급(감리사보) | | | |
| | | | 7 | 5 | 3 | | | |
| | ·경력 | (8) | 9년이상 | 7년이상 | 5년이상 | 5년미만 | | |
| | | | 8 | 6 | 4 | 2 | | |
| | ·용역실적 | (10) | 84개월이상 | 72개월이상 | 60개월이상 | 60개월미만 | | |
| | | | 10 | 8 | 6 | 4 | | |
| 경영상태 | - 경영상태 | 34 | | | | | | |
| |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 | (17) | 100%이상 | 90%이상 | 80%이상 | 70%이상 | 70%미만 | |
| | | | 17 | 15 | 13 | 11 | 9 | |
| |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기준비율) | (17) | 100%이상 | 90%이상 | 80%이상 | 70%이상 | 70%미만 | |
| | | | 17 | 15 | 13 | 11 | 9 | |
| 용역업무 중복정도 | - 용역업무 중복도 | 12 | - 참여기술자의 업무 중복도를 평가 | | | | | |
| | ·용역업무 중복도 | (12) | 1건이하 | 2건이하 | 3건이하 | 4건이상 | | |
| | | | 12 | 8 | 4 | 0 | | |
| 신용도 | - 신용도 | 4 | - 최근 1년이내 해당 용역분야와 관련한 제재사항 | | | | | |
| | ·입찰참가제한 | (2) | ·입찰참가제한 1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 | | | | |
| | ·기술자(감리원)업무정지 | (2) | ·평가대상기술자(감리원)의 업무정지 합산기간 3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 | | | | |

【비 고】

- 참여기술자 및 용역업자에 대한 경력·실적 평가방법 및 확인절차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비고 3호 및 4호를 준용한다. 다만, 관계규정에 별도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유사 용역실적과 관련하여 공동도급의 경우 실적은 용역 참여지분율에 의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며, 적법한 하도급은 그 실적을 인정한다.
3. 용역업무 중복도는 해당 발주청 기준으로 잔여과업의 합산기간이 1년인 경우 1건으로 평가한다.
4. 평가기준에 대하여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방법 등은 용역의 종류에 따라 「건설 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내지 [별표 3]를 준용할 수 있다.
5. 5천만원 미만인 용역에 대하여는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항목 대신에 '경영상태' 평가항목으로 심사하며, 경영상태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 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기준 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신규 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다.
 - 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한다.

III. 적격심사 제출서류

- 적격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2호 서식]
-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 평가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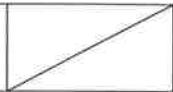
가.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건설기술인협회 발급본]

- 나.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계획표(사업책임자 1인, 분야별책임자 1인)[양식1]
- 다. 참여기술자에 대한 이력 및 경력 실적사항[양식2, 양식3]
- 라. 경영상태 평가자료[양식4]
- 마. 용역업무 중복도[양식5]
- 바.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등[양식6]
- 사. 적격심사 자기평가 산출근거[양식7]
- 아. 기타 당해 용역수행 관련 결격 사유

- 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부본 1부)
- 규격 : A4(210cm×296cm)
- 지질 : 백상지
- 인쇄방법 : 공판인쇄
- 제본 : 양면좌철(무사무선철)

[표지]

관리
번호



사업수행적격심사자료

(0000 실시설계용역)

2017. 00. 00.

[주]○○ 엔지니어링

[담당자 ○○○, 전화번호 ○○○-○○○○]

적격심사신청서

- 용역명 :
- 발주기관 :
- 입찰일시 :

위 건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입찰자 주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 | |
|------|--|
| 공고번호 | |
| 입찰일시 | |
| 용역명 | |
| 용역기간 | |
| 수요기관 | |
| 입찰금액 | |
| 예정가격 | |
| 제출기한 | |

2. 심사대상입찰자

| | |
|-------------------------------|---------------------|
| 업체명 | (전화) |
| 대표자 | |
| 업종구분 | 감리(), 설계(), 기타() |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 |
| 소속 | |
| 직위 | |
| 성명 | |
| 전화번호 | (Fax) |

4. 종합평가

| 구 분 | 배 점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
| 계 | 100 | | |
| 참여기술자 | 50×30/100 | | |
| 경영상태 | 자본비율 : | | |
| | 유동비율 : | 34×30/100 | |
| 업무중복정도 | 12×30/100 | | |
| 신용도 | 4×30/100 | | |
| 입찰가격 | 70 | | |
| 결격사유 | -40 | | |

<별지 제3호 서식>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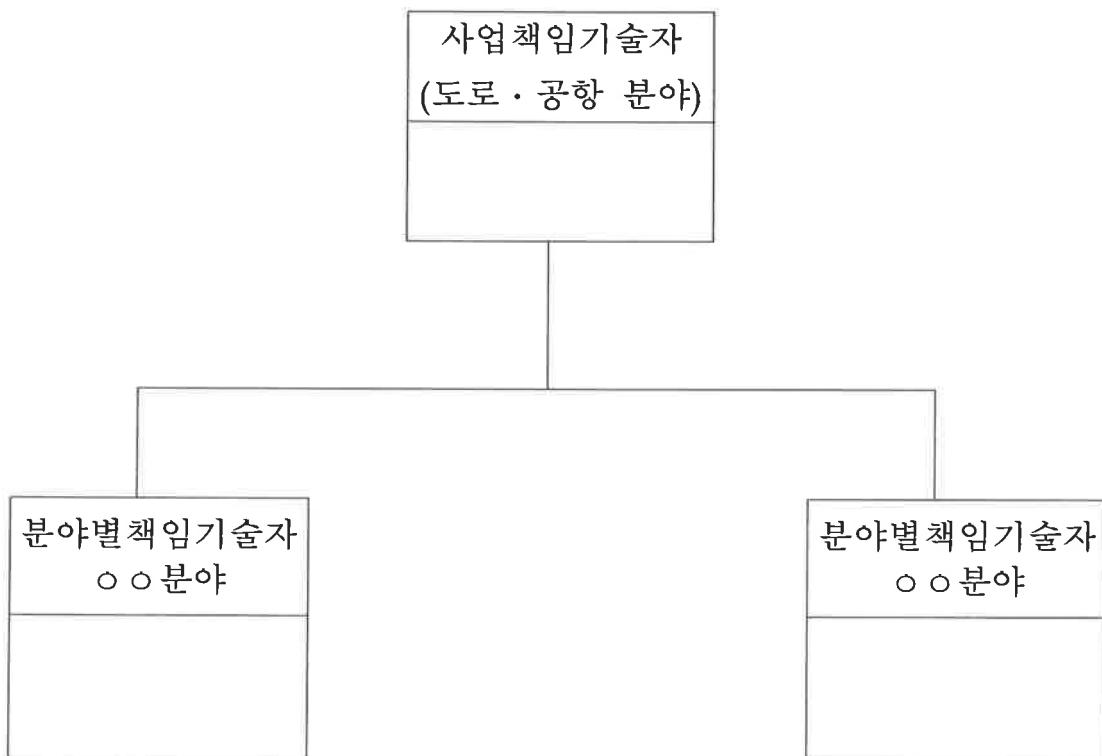
| | | | | | | |
|--------------|------------------------|---------------|------|----|---------------------------|----|
| 신청인 | 업체명(상호) | | | | 대표자 | |
| | 영업소재지 | | | | 전화번호 | |
| | 사업자번호 | | | | 입찰공고번호 | |
| | 증명서용도 | 기술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 | | 제출처 | |
| |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금액 등) | | | | | |
| 용역이행 실적내용 | 용역명 | | | 구분 | 설계() 감리() 기타() : | |
| | 용역개요 | | | | | |
| | 계약번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 규모 | 이행실적 | 비고 |
| | | | | | 비율 | |
| 증명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 | | | | |
| | 년 월 일 | | | | | |
| |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 | | | |
| | 주소 : (FAX번호 :) | | | | | |
| 발급부서 : | 담당자 : | | | | | |

※ 작성요령

- 가.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나.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 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 다. 이행실적 내용란에는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양식 1>

□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계획표



<양식 2>

□ 참여기술자 총괄

| 구 분 | 분 야 | 등 급 | 주민등록 번 호 | 자격 내용 | | 소속 회사 | 비고 |
|------------------|-----|-------|----------|-------|-----|-------|----|
| | | | | 자격명 | 취득일 | | |
| 사업 책임 기술자 | ○○○ | 도로·공항 | | | | | |
| 분야별 책임 기술자 | ○○○ | 토질·지질 | | | | | |
| 분야별 책임 기술자 | ○○○ | 구조 | | | | | |

- 첨부 : 1. 자격증 사본
 2. 기술자 경력확인서 1부.

※ 작성요령

기술자 자격·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확인을 득한 것만 인정
 평가함. (A4종으로 작성)

<양식 3>

□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1. 인적사항 및 등급

| | | | | | |
|-----------------|--------------------------------------|------|------|----------------|--|
| 성명 | | 소속회사 | | 주민번호 | |
| 기술등급 (직무/전문) |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 (토목 특급/ 토목구조 특급) | | | | |
| 자격증 (분야및종류) | | | 참여분야 | | |
| 경력 | 468일÷360일= 1.3년 | | 실적 | 576÷30일=15.6개월 | |

2. 경력

| 연번 | 사업명 | 구분 (해당 분야) | 참여기간 | | | 환산일수(경력) | | 발 주 처 | 담당 업무 | 참여당시 | |
|----|------------------|------------------|----------------|----------------|-----------------|-------------------|-------------------|-------------|----------|----------|----|
| | | | 착수 | 준공 | 참여 일수 (A) | 인정율 (%) (B) | 인정 기간 (A×B) | | | 소속 회사 | 직위 |
| | 산정결과 | | | | | | 1.3년 | | | 1년=360일 | |
| 계 | 건 | | | | | | 468 | | | 468/360 | |
| 1 | 국도00호선 실시설계용역 | 도로 | 2008. 01.01 | 2009. 12.31 | 360 | 100% | 360 | XX 국도 | | | |
| 2 | 국도00호선 건설공사 | 도로 | 2010. 01.01 | 2011. 12.31 | 180 | 60% | 108 | XX 국도 | | | |

3. 실적

| 연번 | 사업명 | 구분 (해당 분야) | 참여기간 | | | 환산일수(경력) | | 발 주 처 | 담당 업무 | 참여당시 | |
|----|------------------|------------------|----------------|----------------|-----------------|-------------------|-------------------|-------------|----------|----------|----|
| | | | 착수 | 준공 | 참여 일수 (A) | 인정율 (%) (B) | 인정 기간 (A×B) | | | 소속 회사 | 직위 |
| | 산정결과 | | | | | | 15.6월 | | | 1개월=30일 | |
| 계 | 건 | | | | | | 468 | | | 468/30 | |
| 1 | 국도00호선 실시설계용역 | 도로 | 2008. 01.01 | 2009. 12.31 | 365 | 100% | 360 | XX 국도 | | | |
| 2 | 국도00호선 건설공사 | 도로 | 2010. 01.01 | 2011. 12.31 | 180 | 100% | 108 | XX 국도 | | | |

※ 작성요령

본문 II. 세부평가기준 → 1.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기준 → “마. 참여기술자의 경력평가기준”, “바. 참여기술자의 경력평가 시 근무경력의 인정범위”, “사. 참여기술자의 용역실적 평가기준” 참조

<양식 4>

□ 경영상태

(단위 : 백만원)

| | | | |
|------------|---|------|---|
| 1. 회사명 | | | |
| 2. 주소 | | | |
| 3. 전화번호 | | | |
| 4. 설립년도 | | | |
| 5. 자본금 | | | |
| 6. 재정상태건설도 | | | |
| 자기자본금 | | 유동자산 | |
| 총자산 | | 유동부채 | |
| 자기자본비율 | % | 유동비율 | % |

○ 자기자본 비율 = 자기자본 ÷ 총자산 = A%
 A% ÷ 전체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 평균자기자본비율 =

○ 유동자산 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B%
 B% ÷ 전체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 평균유동비율 =

- ※ 증빙서류 첨부할 것.(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최근년도 재무재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 전체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 평균자기자본(유동)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평가분석” 자료를 사용함.
- ※ 회사별로 작성하여 기재할 것.

<양식 5>

□ 용역업무중복도

1. 현재수행중인 용역사업(참여기술자 중복도)

| 구분 | 성명 | 용역업무 참여현황 | | | | | 비고 (용역중단 여부 등) |
|--------------------------|----|-----------|-----|--------------|------|----------|----------------------|
| | | 용역명 | 발주청 | 용역비 (백만원) | 참여기간 | | |
| | | | | | 분야 | 참여 기간 | 중복 일수 |
| 사업 책임 기술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건 | | | | |
| 분야별 책임 기술자 (토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건 | | | | |
| 분야별 책임 기술자 (구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건 | | | | |

※ 작성요령

- 가.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 중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것만 기재
- 나. 타 회사에 하도급을 준 경우는 ()로 내용을 기재

<양식 6>

□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 용역업체

| 업체명 | 업무정지 및 제재기간 | 기간(월) | 조치기관명 | 사유요약 | 비고 |
|-----|-------------|-------|-------|------|----|
| 계 | | | | | |
| | | | | | |

○ 참여기술자

| 성명 | 업무정지 및 제재기간 | 기간(월) | 조치기관명 | 사유요약 | 비고 |
|----|-------------|-------|-------|------|----|
| 계 | | | | | |
| | | | | | |

첨부 : 1. 부실별점 및 제재확인서 1부

※ 작성요령

- 가. 용역업자는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해당사항이 없어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 나. 참여기술자는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 징계처분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한다. 또한, 업무정지 등 처분을 받아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 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 처분사항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양식 7>

□ 자기평가 산출근거

| 구 分 | | 평가점수 | 산출근거 | |
|--------------|--------------|---------|------|--|
| 총 계 | | | | |
| 1. 참여 기술자 | 합 계 | | | |
| | 사업책임 기술자 | 계 | | |
| | | 등급 | | |
| | | 경력 | | |
| | | 실적 | | |
| | 분야별책임 기술자 | 계 | | |
| | | 등급 | | |
| | | 경력 | | |
| | | 실적 | | |
| 2. 경영상태 | | 계 | | |
| | | 자본비율 | | |
| | | 유동비율 | | |
| 3. 업무중복정도 | | 계 | | |
| | | 책임기술자 | | |
| | | 분야별책임 | | |
| 4. 신용도 | | 계 | | |
| | | 입찰참가제한 | | |
| | | 기술자업무정지 | | |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가.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 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나.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바람
- 다.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예시 :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라.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 :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 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평가서에 첨부하여 제출)